

**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
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**



구 미 시

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강화 및 글로벌 리더육성을 위하여 건립된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운영 위탁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9조가 신설·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(중요프로그램운영)만 위탁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고,
- 현재 프로그램운영 위탁 계약기간이 2015년 12월말 종료됨에 따라, 수련관 전체를 운영할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전문적, 체계적 운영으로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탁재산 현황
 - 건 물 명 :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
 - 위 치 : 구미시 선산읍 단계동길 270번지
 - 규 모
 - 본 관 : 부지 10,022㎡, 연면적 6,269.06㎡(지하1층, 지상4층)
 - 생활관 : 부지 6,052㎡, 연면적 6,687.36㎡(지하2층, 지상4층)
 - 사 업 비
 - 본 관 : 112억(국 비 28, 시 비 84)
 - 생활관 : 145억(시 비 138, 특교세 7)
 - 주요시설
 - 본 관 : 강당, 강의실, 로봇체험관, 야외공연장, 실내체육관, 식당 등
 - 생활관 : 생활관(67실), 실내수영장(25m, 5레인), 진로체험실 등
- 위탁 기간 : 2016. 1. 1 ~ 2018. 12. 31(3년)

3. 운영 소요예산 : 1,661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운영경비	일반관리비	비고
1,661	1,067	515	79	

4. 관계법령
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39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
- 「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, 제8조

재 산 현 황

구 분			건 물		토 지		비 고
			동 수	연면적(m ²)	필 지	면 적(m ²)	
합 계							
공 유 재 산	행 정 재 산	공용재산	3	12,956.42	18	16,074	
		공공용재산					
		기업용재산					
		보존용재산					
	일 반 재 산	행 산 재 산 외 모든 공유재산					

위탁시설현황

□ 청소년수련관 본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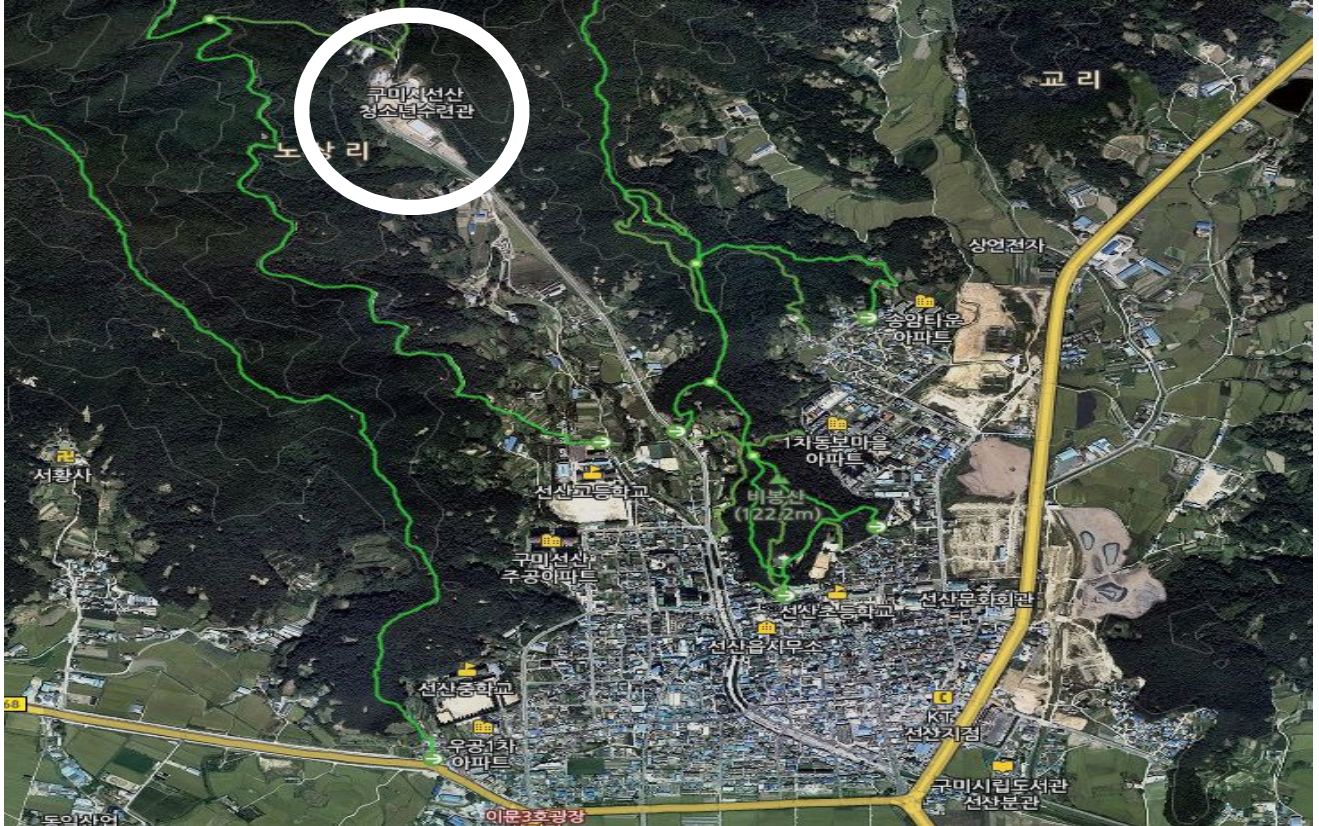
구분	시 설 물 내 역		비고
건 축 물	지하1층/(654.19m ²)	기계실, 물품보관실, 전기실 등	
	지상1층/(1,857.99m ²)	강당(260석), 양호실, 상담실, 식당(250석)	
	지상2층/(1,808.5m ²)	사무실, 명륜관 강의실, 체육관(500명), 야외공연장	
	지상3층/(986.34m ²)	로봇체험관, 창작공방실, 영상편집·멀티미디어실	
	지상4층/(962.04m ²)	골프체험관, 음악·노래·댄스연습실	

□ 청소년수련관 생활관

구분	시 설 물 내 역		비고
건 축 물	지하2층/(1,363.21m ²)	수영장(25m5레인), 샤워실, 의무실, 기계실	
	지하1층/(1,054.02m ²)	사무실, 진로체험실, 휴게실, 주차장	
	지상1층/(1,143.88m ²)	생활관(16실), 다용도실, 화장실(남,여)	
	지상2층/(1,034.55m ²)	생활관(17실), 다용도실, 화장실(남,여)	
	지상3층/(1,045.85m ²)	생활관(17실), 다용도실, 화장실(남,여)	
	지상4층/(1,045.85m ²)	생활관(17실), 다용도실, 화장실(남,여)	

위치도 및 조감도

□ 위치도



□ 조 감 도



관계 법령

◎ 청소년활동 진흥법

제39조(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)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(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)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·등록·인가·허가를 받은 법인·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[본조신설 2014.1.21. 시행 2014.7.22]

◎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<개정 2013.6.21., 2015.7.20.>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 <신설 2013.6.21., 2015.7.20.>

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4.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
◎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◎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7조(운영 등)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미시설공단, 청소년관련학과가 있는 대학(교),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1.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·장비·시설 및 기술
2. 책임감·능력·공신력 및 재정적 부담능력
3.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
4.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·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

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(이하 “위탁운영기관”이라 한다)은 관리·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·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위탁운영기관에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대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위탁운영기관으로 하여금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위탁운영기관은 시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위탁기간)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, 업무의 연속성 등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소관 실·과		가족지원과
입 안 자	과 장	김 용 학
	담 당	이 상 춘
	담 당 자	이 은 주 (480-5192)